

부전공 및 복수전공 규정

제 정 2009. 3.

개 정 2010. 6.

개 정 2013. 2.

개 정 2015. 2.

개 정 2016. 2.

개 정 2019. 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30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부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23.)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전공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연구 및 실기영역을 넓히는 것을 부전공이라 하며, 부전공에는 18학점으로 이수하는 트랙을 포함한다.(개정 2015.02.23.)(개정 2019.06.14.)

②전공분야 이외에 제2의 영역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주전공과 함께 복수전공에도 별도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복수전공이라 하며, 복수전공에는 36학점으로 이수하는 트랙을 포함한다.(개정 2015.02.23.)(개정 2019.06.14.)

③제1항에서 명시한 트랙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신설 2015.02.23. 개정2016.02.01.)(개정 2019.06.14.)

1. 글로벌브랜드트랙이라 함은 창업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실무 위주의 별도 교육과정을 말하며, 글로벌브랜드트랙에는 주전공 및 타 전공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2. 글로벌역량강화트랙이라 함은 본 대학에 설치된 전공이외에 실무 위주의 외국어 또는 자격증취득 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말하며, 글로벌역량강화트랙에는 주전공 및 타 전공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연계전공트랙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서로 유사한 전공간의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편성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연계부전공트랙이라 함은 동일 단과대학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전공간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편성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전공융복합트랙 또는 전공융합트랙이라 함은 단과대학 또는 전공과 상관없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전공 교육과정을 융·복합하여 주전공과 함께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말한다.(개정 2016.02.01.)

6. 전공심화트랙이라 함은 주전공 교육과정의 심화 과정 이수를 위하여 주전공 내에서 별도로 편성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 (이수범위) 본 대학에 설치된 모든 학부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02.23)

제4조 (이수신청) ①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1학년이상 재학 중인 자로서 소속 학부와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부의 학부장의 승인을 거쳐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신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2.23.)(개정2016.02.01.)

②국내외의 타 학교, 연구기관, 학교에서 지정한 국내 외 타교육기관 등에서 행한 교육, 연구, 실습

등을 이수하는 경우 사전심의 및 허가를 받아 해당 교육과정을 부전공으로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201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주전공 이외에 1개 이상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1학년 2학기 말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이수신청을 하고 졸업 전까지 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과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2.23)

④삭제(개정 2015.02.23)

제5조 (교육과정 개설 및 수강지도) ①모든 학과에서는 부전공 및 복수전공 과정이수를 위하여 해당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 및 개설하여야 하며, 이수를 위한 수강지도는 주관 학부(과)에서 담당하여 이수교과목 및 선이수 지정 등을 지도 하여야 한다(다만, 고등교육법 등에 의하여 모집정원 승인을 받는 보건의계열 및 교육학과 계열은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15.02.23.)

②학년별 학기별 부전공 및 복수전공 과정 이수를 위한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의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5.02.23)

제6조 (실험실습비) 부전공 및 복수전공과정에서 실험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에 따르는 비용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2.23)

제7조 (부전공 이수학점) ①부전공과정은 해당과정에 대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3) (개정 2019.06.14.)

②동일한 교과목을 주전공과 부전공과정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2.23)

제8조 (복수전공 이수학점) ①복수전공은 복수전공 교과목을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06.14.)

②동일한 교과목을 주전공과 복수전공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2.23.)

③2+2복수학위과정, 해외연수과정, 인턴십과정, 특별교육과정 등으로 인하여 이수 중인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지속할 수 없을 때는 학칙 제33조 및 규정'4학기제 시행 운영규정' 제10조(수강신청 학점의 한도)에 의한 학점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1.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이수구분별 이수인정 학점의 범위는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부전공학점으로 인정 한다. 다만, 그 인정 학년 및 학기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로 하되, 여름·겨울 학기는 제외 한다.

2.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이수구분별 이수인정 학점의 범위는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2015학년도 2학년 1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하며, 동 학년·학기로 복학 및 재입학한 학생도 동일하게 적용 한다.

④위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중도에 포기 하여 해당 과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3항에서 정한 이수인정을 취소한다.(개정 2015.02.23.)

제9조(이수변경 및 포기) ①이수중인 부전공 및 복수전공 과정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나 이미 변경하거나 포기한 과정을 재이수 할 수는 없으며, 변경하거나 포기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외에 1가지 이상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03.02.)

②전항에 따라 변경 및 포기하거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02.23.)

③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과정을 교차하여 변경하는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를 심사하여 변경후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5.02.23.)

제10조(이수사정 및 이수인정) ①부전공 및 복수전공 과정의 이수사정은 주관 학부(과)에서 이를 담당한다.(개정 2015.02.23.)

②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는 학적부 및 학위증(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포함)에 과점명을 포함하여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표기 한다(단, 전공심화트랙은 부전공으로 표기하지 않는다)(개정 2015.02.23.)

제11조(졸업제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이를 이수완료 할 때까지는 본 대학의 졸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2.23.)

제12조(기타) ①부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하여 학칙과 이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삭제(개정 2015.02.2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제2조 및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8학년도 이전입학생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전공 이수학점은 21학점으로 한다.
2.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한다.